

[발급번호] 제0000년-00월-(일련번호)

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확인증

신청인	제작자명	제작자등록번호
	대표자명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)
	전화번호	
	주소	

튜닝 작업의 시설 및 인력	☐ 시설면적 400㎡ 이상(작업장·검차장·사무실·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을 말합니다)
	☐ 검사시설:① 리프트[](승용자동차 및 경형·소형의 승합·화물·특수자동차를 튜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② 피트 []
	☐ 도장시설(직접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
	☐ 검사기구(제동시험기 / 정밀도검사 번호:) ※ 제동장치에 대한 튜닝을 하거나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 별표 33에 따른 차량중량이 제원의 허용차 범위를 초과하는 튜닝 작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.
	☐ 기술인력(자동차정비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말합니다)
튜닝 작업 범위	☐ 길이·너비 및 높이 [] 총중량 [] 차체 및 차대
	☐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※ 피견인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튜닝을 위하여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의 튜닝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.
	☐ 승차장치 [] 물품적재장치
	☐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작업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에 대하여 확인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교통안전공단이사장



직인

유의사항

○ 튜닝작업의 시설·인력 등 및 튜닝작업 범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5조의2제4항에 따라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.